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68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김태선・이기헌・권칠승

정준호 · 김영배 · 김태년

장철민 · 오세희 · 한민수

김준형・박 정・이용우

맹성규 • 이훈기 • 박균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노출이 일상화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아동·청소 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할 때 14세 미만 아동을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제22조의2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각각 "19세"로, "아동이"를 "아동·청소년이"로, "아동의"를 "아동·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지침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만 14세"를 "19세"로, "아동에게"를 "아동·청소년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방법"을 "방법, 안내"로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3)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 세-----아동·청소년이-----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청소년의-----을 마련하여야 한다. <후단 신 이 경우 14세 미만 아동과 14 설> 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 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 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 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 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보호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

- ② · ③ (생 략)
-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7
 - ① · ② (생 략)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u>만 14세</u> 미만의 <u>아동에게</u>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 의 확인 <u>방법</u>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위한 표준지침을 별도로 정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19</u> All
<u>아동·청소년에게</u>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9세 미
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제4조
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
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안
내하여야 한다.
<u>⑤</u> <u>제4항까지에서</u>
<u>방법, 안내</u>